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우리마을돌봄센터(주간보호센터) 1차 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우리마을돌봄센터(주간보호센터)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	직위	인원	주요업무
기간제	센터장	1	◦ 센터 총괄 ◦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 관련 사무 및 프로그램 기획 업무 등 ◦ 주간보호서비스 접수 및 상담, 계약 이용료 청구 등 ◦ 긴급돌봄지원사업 관련 업무 등 ◦ 마을중심 돌봄모델 개발 및 운영
	요양보호사	1	◦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등)
채용인원		2	

2. 응시자격 요건

직위	응시 자격
센터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u>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u>
요양 보호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u>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u>
공통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참고1]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제35조의 2(종사자)규정에 해당하는자

3. 임용 조건 및 보수 수준

가. 근무/근무지: 주**40**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우리마을돌봄센터 내(한경면 소재)
나. 보수수준

구분	보수형태	금액
센터장	월급제	당해 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급 7호봉 준용
요양보호사	월급제	당해 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다. 계약기간

채용분야	모집인원	계약기간	비고
센터장	1명	근로계약 체결일 ~ 2024.12.31.	
요양보호사	1명	(계약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운영기간에 따라 재계약 가능)	

4. 채용 일정

구 분	일정	비 고
공고	‘24. 4. 1.(월) ~ 4. 12.(금)	
원서접수	‘24. 4. 1.(월) ~ 4. 12.(금) 17:00	
서류전형	‘24. 4. 15.(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 4. 17.(수)	
면접시험(인성·역량 면접) ※센터장은 운영계획발표	‘24. 4. 19.(금)	
최종 합격자 발표	‘24. 4. 22.(월)	
임용등록기간	‘24. 4. 22.(월) ~ 4. 26.(금)	
임용예정일	‘24. 6월 초(센터장) ‘24. 4. 29.(요양보호사)	

※ 상기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용일 전 인수인계를 위해 요청 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5. 공고 및 지원서 접수

가. 채용 공고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

나.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응시자 공통	응시원서	[서식1] 필수제출
	자기소개서	[서식2] 필수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필수제출
	경력기술서 (센터장 응시자에 한함)	[서식4] 필수제출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필수제출
	주민등록 초본	필수제출 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 기재, 병역사항 포함
	재직/경력증명서	해당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가산점 확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해당자(가산점 확인)
	1. 사회적 취업취약계층 증명서 2. 시설 치매전문 교육 수료증(요양보호사)	해당자(우대사항 확인)
최종 합격자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채용신체검사서 (일반채용 신체검사서- 감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검사를 포함하거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4. 주민등록 등본(13자리 모두 표시) 5- 1.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관내 경찰서 발급) 5- 2.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관내 경찰서 발급) 6.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부(3*4cm) 7.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기타 서류는 별도 안내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 우 검사 결과로 채용신체검사 를 대신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다. 지원서 접수 방법: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

구분	주소	비 고
전자 우편	jejupass1@jeju.pass.or.kr	
방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인사노무팀	평일(월~금 09:00~18:00) ※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라.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 정보가림 채용을 위하여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노출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가림 처리됨
-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및 임용 취소(최종합격 이후 재직 및 경력증명 내역 수정 불가)
- 응시자의 연락 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가점 확인 및 자격 확인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사 결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음
- 최종합격 발표 후 상기 증명서류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6. 전형절차 및 심사기준

가. 서류전형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심사방법
 - 채용분야 응시자격 기준 적격 여부 심사, 적격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필기전형 응시기회 부여
- 합격자 통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나. 면접전형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본부
- 면접 평정요소

공적책무성 등	이해력·지식수준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인성 및 직업관	창의성 및 전문성	배점
20	20	20	20	20	100

- 센터장 응시자 면접
 - 운영계획 발표 : 운영 비전, 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계획, 마을중심 돌봄모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자원활용 방안을 중점으로 평점
- 합격 배수: 선발예정 인원 이내

라. 가점 기준(우대사항)

구 분	대 상	우대 요건	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면접 각 항목 40% 이상 득점 시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 장이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		면접 만점의 5%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인근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거주자(한경면)(①)		동점자 우대 채용	주민등록초 본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②)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③) .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④)			증명서
치매전문 교육	. 시설 치매전문교육 수료자(⑤)			수료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 ○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인근지역거주자,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및 치매전문교육 수료자(①→⑤) 순으로 우대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중복 적용 불가)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7. 최종합격자 결정 및 통지

가. 평정요소별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나.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으로 합격자 선정

구분	면접 평정요소	합격자 결정 기준
공통 사항	①공적책무성, 주간보호센터의 목적성 부합여부 ②이해력 및 지식수준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인성 및 직업관 ⑤창의성 및 전문성	·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동점자 처리】 - 1순위: 인근지역거주자 - 2순위: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 3순위: 시설 치매전문교육 수료자 (①→⑤순으로우대) - 4순위: 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 (①→②→③→④→⑤) ※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다. 유의사항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라. 최종 합격자 통지: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안내

8. 예비합격자

가. 예비합격자 제도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나.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순번(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9.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

가.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접수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방법: “채용결과 이의 신청서”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노무팀으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나. 채용서류 반환

- 청구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방법: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작성·서명한 후 사회서비스원 인사노무팀에 제출
- 반환방법: 응시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은 사회서비스원 부담)

10.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계획(절차 포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수시 확인 바랍니다.

나.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전형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다.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근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임용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임용 예정일 이후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노무팀(070- 8805- 90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